


의정활동보고서



제229회 임시회(2008. 10. 7 ~ 10. 2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임승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제229회 임시회 개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연이은 임시회와 지역의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방 균형발전 등 다양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도에서도 금융시장안정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산 분유제품의 멜라민 성분 검출로 식품안전성 문제도 심히 우려 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6일 신 도청 소재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와 기본 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를 계기로 경북도 전체가 발전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알찬 결실을 맺도록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각종 안전처리와 의원연수회 등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한층 나아지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175
II. 의사일정		177
1. 소	집	177
2. 회	기	177
3. 활	동	178
가.	본회의	178
나.	위원회	179
III. 의안	처리	193
IV. 민원	처리	195
1. 청	원	195
2. 진	정	195
가.	접 수	195
나.	처 리	196
V. 본회의	보고사항	197
1. 의안	접수사항	197

2. 조례 공포 사항	197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198
 VI. 5분 자유발언	 201

부 록

□ 조례안(6건) 217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7일 11:00 개최하여 10월 20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36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7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휴회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와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6부터 17일까지는 의원연수회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간 개최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8-12호
(2008년 9월 29일)

라. 집회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8년 10월 7일 ~ 10월 20일(14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62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28회 까지	457	28	73	69	71	62	56	68	30
229회	36	1	7	4	5	5	7	7	
누 계	493	29	80	73	76	67	63	75	30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3. 활 동

가.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월 7일(화) 11:00 개의 (제1차)	1.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월 20일(월) 11:00 개의 (제2차)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휴회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가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타시도 공기업인 개발공사 경영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북 부안군 모항과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현장인 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 및 부산 도시공사 시행사업현장인 신항배후부지, 거가대교 건설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쟁력있고 수준높은 지방 공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타시도의 개발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경영우수사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중적으로 제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북개발공사의 경영에 적극 지원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현지활동으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구영어마을, 나자렛집,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과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영어경쟁력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영어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집중식 영어교육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영어교육 활성

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가 출산을 감소, 고령화, 혼인을 감소, 이혼을 증가,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가족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개발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높이는 시책 등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대구영어마을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나자렛집을 방문하여 입소자 현황,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보조금 지원현황, 주요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시설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여성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의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등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질적인 보육지원책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모범공무원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도교육청 및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지었다.

10월 9일에서 10일까지 1박 2일간 안동·영주지역 소관 기관과 관련 현장을 찾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나섰다. 현지확인 첫째 날인 9일은 영주지역의 영주교육청과 영주영어 체험센터를 방문하고, 둘째 날인 10일은 안동지역의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관련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목적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현황과 현안 사항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방문에서는 영주교육청의 일반 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영주영어체험센터의 주요 시설과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의회차원에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음과 동시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운영 현황과 관련

사방사업 현장의 사업추진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는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양일간 군위 군위읍 소재 동아LPC(Live Stock Packing Center), 영주시 풍기읍 소재 영주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서안동농협RPC(Rice Processing Complex) 등 농축산물 전문유통가공시설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단체와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첫날인 10월 9일 군위군 부계면 소재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군위읍 소재 동아LPC를 방문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현황을 청취한 후 위생·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물론 자체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고 이어서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지역에 설치된 영주APC(거점산지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선별·저장·포장·판매가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한 후 유통비용절감으로 생산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는 차별화 전략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당부하였다.

둘째날인 10월 10일에는 벼의 수집·건조·저장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처리하는 서안동농협RPC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후에는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농촌지역 주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전원마을조성지를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배가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 이번 현지확인(방문) 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은 오는 1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활용할 계획이며,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은 2009년도 예산 심사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상문화위원회는 10월 10일 제89회 여수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을 참관한데 이어 11일에는 육상, 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여 출전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선수단을 찾은 통상문화위원들은 “고된 훈련을 끈기로 극복하고, 경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 선수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웅도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임원과 선수단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좋은 성적을 거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장(김기홍)은 후반기 의정활동 중점목표가 부실 공사근절 및 예방으로 예산절감과 함께 도민들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업무보고에서 탈피하여 공사현장을 직접 파헤쳐 나가기로 하였다.

그 첫단계로, 지난 10월 7일 「도 발주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제정에 이어 10월 10일 「문경 동로 ~상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는 상임위원들이 코아채취기(아스콘피복포장두께 검측장비)와 철근탐지기(철근피복두께, 배근간격, 철근직경 등을 검측하는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여 공사현장을 파헤쳐 보고 아스콘피복두께, 철근강도, 배근간격 등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납품되는 각종 관급·사급자재의 품질 및 규격 등도 직접 만져보고 확인함으로써,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계자들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근절 및 예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장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지확인에 앞서 시공자들이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부실공사라는 단어 자체를 떨쳐

버리고 완공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향후 현장확인시 계속 장비동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8. 10. 8(수) 14:00 (제1차)	○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회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건 ○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0. 7(화)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 ○ 개 회	본회의장
	(13:30)	☐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 간담회	기획경제 의 원 실
10. 8(수)	제1차 상임위 (11:00)	☐ 안전심사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경제위 회 의 실
10. 9(목) ~ 10. 12(일)		○ 휴 회	
10. 13(월) ~ 10. 15(수)	상임위 (10:00)	☐ 현지확인 ○ 타시도 공기업(개발공사) 및 지역개발현장	현지
10. 16(목) ~ 10. 17(금)		☐ 도의원 연수	포항
10. 18(토) ~ 10. 19(일)		○ 휴 회	
10. 20(월)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안전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일 시	차 수	내 용	장 소
10. 7(화)	본회의 제 1 차 (11:00)	☐ 개회 ○ 안전처리 등	본회의장
	상임위 제1차 (14:00)	☐ 안건 심사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보건 복지 위원회 회의실
10. 8(수)		○ 휴 회	
10. 9(목) ~ 10. 10(금)	상임위 활 동	☐ 현지확인 ○ 대구영어마을(칠곡) ○ 나자렛집(영천) ○ 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산) ○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경산)	
10. 11(토) ~ 10. 16(목)		○ 휴 회	
10. 17(금) 14:00		☐ 정책토론회 개최 ○ 참석인원 : 150명 정도 - 도의회의장,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및 위원, 도·시군여성의원, 여성단체대표자 등 ○ 주최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도청 강당
10. 20(월) 11:00	본회의 제 2 차	☐ 안전처리, 폐회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환경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 7(화) 11:00	☐ 제1차 본회의(개회) 1. 개회식 2. 안전심사 ①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②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③ 휴회의 건	본회의장
10. 8(수) 11:00	☐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상임위 회의실
10. 9(목) ~ 10. 10(금)	☐ 현지확인 ○ 영주교육청, 영주영어체험센터 ○ 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 사방사업 현장	영주시 안동시
10. 11(토) ~ 10. 15(수)	○ 휴 회	
10. 16(목) ~ 10. 17(금)	※ 의원연수회	포항칠포 파인비치 호 텔
10. 18(토) ~ 10. 19(일)	○ 휴 회	
10. 20(월) 11:00	☐ 제2차 본회의(폐회) ○ 안전처리	본회의장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일 시		구 분	안 건	비 고
10. 7 (화)	11:00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안건처리	본회의장
	14:00	제 1 차 농수산 위원회	○ 『2008년도 행정사무감계획서』 작성의 건	상임위 회의실
10. 8(수)			○ 휴 회	
10. 9(목) ~ 10. 10(금)	상임위 활 동	☐ 현지 확인		
		- 동아LPC(축산물종합처리장)		군 위
		- 부계 친환경영농조합법인		"
		- 영주 APC(거점산지유통센터)		영 주
		- 서안동농협 RPC		안 동
		- 전원마을조성지(벽진지구)		성 주
10. 11(토) ~ 10. 15(수)			○ 휴 회	
10. 16(목) ~ 10. 17(금)			☐ 의원 연수회 - 포항 칠포 파인비치호텔	
10. 18(토) ~ 10. 19(일)			○ 휴 회	
10. 20(월) 11:00		제2차 본회의	☐ 안건 처리 ☐ 폐 회	본회의장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일 시	구 분	내 용	비 고
10. 7(화)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개회, 안전처리)	본회의장
	14:00	☐ 간담회	통상문화 위 원 회 사 무 실
10. 8(수)	상임위 11:00	☐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 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통상문화 위 원 회 회 의 실
10. 9(목)		○ 휴 회	
10. 10(금) ~ 10. 11(토)		☐ 전국체전 개막식 참관 및 선수단 격려	전남 여수 (10. 10 ~ 10. 16)
10. 12(일) ~ 10. 13(월)		○ 휴 회	
10. 14(화)		☐ 현지확인(투자유치기업 관련)	김 천
10. 15(수)		○ 휴 회	
10. 16(목) ~ 10. 17(금)		☐ 의원연수	포 향
10. 18(토) ~ 10. 19(일)		○ 휴 회	
10. 20(월)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안전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10. 7 ~ 10. 20(14일간) 】

일 시	내 용	비 고
10. 7(화) 11:00 ~	☐ 제1차 본회의 ○ 안전처리	본회의장
14:00 ~	☐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운영 조례안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임위 회의실
10. 8(수)	○ 휴 회	
10. 9(목) ~ 10. 10(금)	☐ 현지 확인 ○ 김천소방서(업무보고) ○ 동로~ 상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 영주 선비촌 조성 현장	김천 문경 영주
10. 11(토) ~ 10. 12(일)	○ 휴 회	
10. 13(월) ~ 10. 14(화)	☐ 현지 확인 ○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 및 한마음 체육대회 참관 ○ 소방학교(업무보고)	군위 안동
10. 15(수)	○ 휴 회	
10. 16(목) ~ 10. 17(금)	☐ 의원 연수회	포항
10. 18(토) ~ 10. 19(화)	○ 휴 회	
10. 20(월) 11:00 ~	☐ 제2차 본회의 ○ 안전처리(폐회)	

Ⅲ. 의안처리

(2008. 10. 20 현재-229회 최종)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83 (250)	83 (246)	74 (200)	8 (41)	- (4)	1 (1)		- (4)	
조 례 안	소 계	44 (145)	44 (142)	38 (111)	5 (27)	- (3)	1 (1)		- (3)	
	의 회 제 안	14 (38)	14 (36)	13 (30)	1 (6)				- (2)	
	도지사 제 출	22 (79)	22 (78)	18 (60)	3 (15)	- (2)	1 (1)		- (1)	
	교육감 제 출	8 (28)	8 (28)	7 (21)	1 (6)	- (1)				
규 칙 안		1 (4)	1 (4)	1 (3)	- (1)					
예산·결산		4 (20)	4 (20)	2 (8)	2 (12)					
동의·승인		7 (27)	7 (26)	7 (26)	- -				- (1)	
건 의 안		- (4)	- (4)	- (4)	- -					
결 의 안		7 (15)	7 (15)	6 (13)	1 (1)	- (1)				
기 타 안		20 (35)	20 (35)	20 (35)	- -					

□□ 상임위 유보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 '07. 3. 14 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07. 6. 12 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07. 11. 5 상정유보)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통상문화위원회 - '07. 12. 4 심사유보)

Ⅳ. 민원처리(2008. 10. 20 현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3 (58)	(4)	1 (7)	(5)	2 (25)	(1)	(2)	(4)	(4)	(6)
의 회 운 영	(3)	(1)								(2)
기 회 경 제	(9)			(4)	(2)		(1)			(2)
행 정 보건복지	(7)	(3)	(4)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4)								(4)	
통 상 문 화	1 (6)		1 (3)	(1)			(1)	(1)		
건 설 소 방	2 (22)				2 (21)					(1)
특 별 위원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58)	3 (58)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9)	(9)				
행 정 보건복지	(7)	(7)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1 (5)	1 (5)				
통상문화	(5)	(5)				
건설소방	2 (22)	2 (22)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8. 9. 2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8. 9. 30)
경상북도교육감 (2008. 9. 29)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2008. 9. 30)
경상북도교육감 (2008. 9. 29)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우현의원의외 29인 (2008. 9. 23)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8. 9. 30)

2. 조례 공포 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8. 9. 8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08. 9. 29 (제3058호)
2008. 9.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2008. 10. 2 (제3059호)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상북도지역회의

- 일 시 : 2008. 9. 29(월), 11:3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1시상식

- 일 시 : 2008. 9. 29(월), 14: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경상북도지역치안협의회

- 일 시 : 2008. 9. 29(월), 15:30
- 장 소 : 경북경찰청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8 전·의경 한마음체육대회

- 일 시 : 2008. 9. 30(화), 10:00
- 장 소 : 구미 시민운동장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개원식

- 일 시 : 2008. 9. 30(화), 11:00
- 장 소 : 영천 보건환경연구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 도의원

○ 지식경제자유구역연구모임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8. 10. 1(수), 10:00
- 장 소 :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주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발전방안)
- 참 석 : 이우경 지식경제자유구역모임회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

○ 경북농민사관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08. 10. 1(수), 10:30
- 장 소 : 경일대학교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재래시장연구모임 타시·도 선진시장 방문

- 일 시 : 2008. 10. 1(수) ~ 10. 2(목)
- 장 소 : 금산인삼시장, 함평재래시장
- 참 석 : 이현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연구모임회장을 비
롯한 도의원 등

○ 경상북도생활개선회 수련대회

- 일 시 : 2008. 10. 2(목), 11:00
- 장 소 : 고령 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경북지구 이북도민 제14회 망향제

- 일 시 : 2008. 10. 2(목), 11:3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8. 10. 3(금), 17:30
-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8. 10. 6(월), 11:00
- 장 소 : 경산중고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8년 10월 7일(화) 제22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재철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민의를 대표하시며 옹도경북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도정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신도청소재지 결정이라는 막중대사를 치루면서 겪은 지역분열과 갈등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신도청소재지 결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추진으로 도민이 입은 상처는 실로 엄청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지난 일을 언급하기 보다는 앞으로 300만 도민의 화합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경상북도사무소의 소재지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부디 집행부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남은 신도청소재지 이전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느냐 하면 최근 집행부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신도청소재지 이전과 관련하여 미심쩍고 우려되는 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집행부의 인사이동에서 신도청소재지

결정에 도청이전 추진위 간사를 교체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못 들었다’ 하면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도청이전진상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많은 의혹과 위증을 남기며 모른다고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박의식 새경북기획단장이 청도부군수로 이동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토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이전지 선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해 왔고, 어차피 신도청소재지가 결정된 지금 박의식 단장이 신도청소재지 이전관련부서에 끝까지 남아서 신도청소재지 이전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소신없는 인사 정책에 비애를 느끼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공공연히 공무원교육원과 농업기술원 등 소위 알짜배기 기관의 각 시·군 유치 돌입 등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 또다시 지역분열과 갈등의 우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리가 없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신도청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 알짜배기 기관 분산배치 등으로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신도청소재지 결정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영천, 포항, 경주 등 동남권과 상주 등 탈락 시·군을 따뜻이 보듬고 신도청소재지 이전결정에 수궁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 마련을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행·재정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책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현안과 경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종식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청송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2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과일값 폭락, 특히 사과 값 폭락에 따른 주스용
수매대책과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근래 농산물
산지 공판장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실정들을 호소할 수 있는
기력마저 잃었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이맘
때를 회상해 봅니다. 우리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했던 우박폭탄
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경북도가 빠른 대책과 대안
으로 우박사과를 전량 수매해 줌으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일값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작년보다 더한 시름과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같이 수매를
통해서 저질 하급 품목들을 수매해 준다면 다른 좋은 고급 품종

들과, 품목들의, 가격이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박을 맞았을 때 약 2만톤 정도 계약했지만 9,000여 톤 수매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약 20만 상자 4,000톤 정도만 수매할 수 있다면 과일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작년 예산을 돌이켜 보면 우박폭탄으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마지막에 특별교부세 16억 2,7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북도는 슬그머니 감추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는 표현과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농업 현실, 특히 사과 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북부지역의 사과 농민들에게 수매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부당국의 대안없는 대책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강행 의도를 350만 농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합니다.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칠레 FTA도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었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농민, 농업, 농촌만 피해를 보는 FTA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농민의 공감대와 대안과 대책이 먼저 해결된 뒤에 동의를 해야 될 것

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선결되지 않고 FTA를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선 해결된 뒤에 후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중국발 멜라민 공포로 인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신토불이 로컬 푸드의 당위성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인해서 우리 농업 생산자들의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부처에서 계획해 주시고 특별히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나서서 우리 농산물이, 경북 농산물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홍보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학교주변에 정체불명의 유해식품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 유해식품의 공포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안고 농민들에게 다가갑시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와 대응으로 위기의 경북농업을 구하고 우리 도가 지향하는 ‘부자경북’ 실현과 ‘제발 좀 먹고 살자’ 라는 김관용 도지사님의 바람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촉구합니다.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에게 요청했던 농업부분 예산을 작년 대비 비율에 맞게 틀림없이 증액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숙향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5분 발언을 10분 발언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입니다. 들에는 누런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초·중등학교에서는 운동회, 학예회 등으로 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는 풍성함을 나누어야 할 이 가을마저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국의 학생들, 학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바로 엇그제인 9월 30일 날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가 있고, 10월 14일~15일 초등학교 6학년, 중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23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제발 잠을 잘 수 있게 해 달라는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잠에 취한 아이의 손에 학원 가방을 들려 보내야 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진단평가, 성취도평가, 연합 성취도평가 등 이름을 달리하는 수많은 평가로 우리 경북교육의 현장에 다가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목적을 보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업성취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가차원의 정책수립 그리고 학교,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과별 부진학생들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라면 특정 유형과 집단을 뽑아 평가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별 부진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사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가능하며, 개인의 성취수준 파악과 학부모 제공은 학내 시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을 인성교육의 장이 아닌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북의 교육현실은 어떠합니까? 취학아동이 격감하여 한 해에도 십수개의 학교가 폐교되고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외지로 나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 우리 아이들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 편입시켜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 없이 수많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무시한 채 우리 아이들을 서울 강남, 대구 수성의 아이들과 똑같은 시험지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일제고사를 우리 경북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서 경북차원의 성적을 또 산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성적 산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에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중3의 경우 9월 30일 경북학업성취도 평가, 10월 초 중간고사, 10월 14~1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2주 사이에 세 번의 평가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적인 처사인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이든 등수를 매기면 1등과 꼴찌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이 하위권을 차지하게 될 것은 명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이러 함에도 도교육청은 경북이 전국에서 몇 등을 하면 만족할 수준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일제고사 행렬에 동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북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에서 몇 번째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 도민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우리 도의 현실에 기반 한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농·산·어촌 도시로 구성된 경북교육 현장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 없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로의 편입은 결국 경북 교육을 낙오자로 만들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행예정인 일제고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10월 20일(월) 제22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안순덕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먼저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국기는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얼굴입니다. 국기 속에는 그 나라의 상징과 사상과 정신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이에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 고맙게 살고 나라를 지키자는 의지와 국민된 도리로서 애국의 충정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이 되면서 각종 행사가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행사참석에 분주하셨을 줄 믿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얼굴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시·군 단위 청사 입구나 종합운동장, 또 규모가 큰 관광지, 저는 어제 봉화 청량산을 다녀왔습니다. 봉화 청량산 주차장에 전국에서 온 100여 대의 차가 주차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군 단위의 그런 규모가 큰 관광지 등의 전신주... 제가 비교하는 건 전신주 크기와 높이의 국기 게양대를 우선 설치하고 그에 걸맞는 규격의 태극기를 게양해서 사계절 하늘 아래 펼쳐이는 태극기를 지역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읍·면·동이라도 동사무소는 아니
지만 면, 읍 소재지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는 그러한 것이
설치가 필요하리라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6건

■ 조례안 : 6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 율	14% 이내	21% 이내	36% 이내	21% 이내	8%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4. 별정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15% 이내	23% 이내	36% 이내	18% 이내	8% 이상	비율	14% 이내	21% 이내	36% 이내	21% 이내	8%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262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338	-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68	49	7	4	8
	5급 이하		1,259	-			
별 정 직	소 계		44	-			
	1급 상당		1	1			
	3급 상당		1	1			
	4급 상당		3	1	2		
	5급 상당 이하		39	-			
연 구 직	소 계		190	-			
	연구관		28			27	1
	연구사		162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8			8	
	지도사		19	-			
소 방 직	소 계		2,272	-			
	소방정		17	2		15	
	소방령 이하		2,255	-			
기능직 계			348	-			
교 원	소 계		42	-			
	학 장		1				
	교 수		30				
	조 교		11	-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 2 장 명예감독관 운영

제 3 조(근무방법 등)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명예직인 무급 및 비상근 자율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의 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복, 신발, 완장 등의 개인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명예감독관 지정대상) 명예감독관 지정대상 사업은 도 본청과 사업소가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원상복구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 5 조(명예감독관의 자격 및 지정배치) ①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관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요구하여야 한다.

②추천을 의뢰 받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은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추정사업비 규모에 따라 1인 이상 5인 이내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감독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서와 함께 발주관청에 추천한다.

④발주관청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명예감독관과 발주관청의 관계)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성·준공검사, 관련기관 및 대표자 회의 시 등 참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별 통보하고 불참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명예감독관은 사업 착수 일부터 준공 일까지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한 필요의견은 발주관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업무담당관에게 상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명예감독관의 업무) ①명예감독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편입용지 보상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

청과의 협의의견 조정

2. 공사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위법·부당시공 적발
 4. 기타 당해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역할
- ②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발주관청의 지원 및 조치

제 8 조(자료제공)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과 명예감독 제도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공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용역설계 추진상황 등의 자료를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명예감독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발주관청은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사무실설치 등 사무기기 지원)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실내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제공할 수 있다.

②발주관청은 당해사업의 현지여건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과 사무집기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실과 제반 사무기기를 동시 사용토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출의견 조치) 발주관청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명예감독관 해임 및 재위촉

제11조(해촉) 발주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은 후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명예감독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알게 된 당해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조리에 관여하였을 경우
3. 신병치료 등 1개월 이상 명예감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명예감독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발주관청의 공사를 고의로 방해 하는 등 감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재위촉) 발주관청은 결원으로 발생한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하여도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감독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발주관청으로부터 명예감독관으로 기 지정된 자는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감독관 신청서

- 공 사 명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를 경상북도(○○사업소)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새경북기획팀”을 “새경북기획단”으로
“기획조정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경제과학진흥본부”를 “경제
과학진흥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중 “경도대학”을 “경북도립대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중 “투자통상본부”를 “투자통상국”으로 “관광
산업진흥본부”를 “관광산업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생략) 1. (생략) 2. 기획경제위원회 가. 공보관실, <u>새경북기획팀, 기획조정본부, 경제과학진흥본부</u>,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u>경도대학</u> 소관에 속하는 사항 4~5.(생략) 6. 통상문화위원회 가. <u>투자통상본부, 관광산업진흥본부</u>, 문화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가.; <u>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u>..... 3. 가.<u>경북도립대학</u>..... 4~5.(현행과 같음) 6. 가. <u>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u>,..... 7.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여행”을 “출장 및 여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여행”을 “출장 및 여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8일부터 적용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비고 : 1. 자동차운임(버스)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정액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대구광역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편도 60km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편도 30km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4 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u>여행</u>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4조(여비지급) <u>출장 및 여행</u>
제 5 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u>여행</u> 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제 5 조(여비의 종류) ① <u>국내출장 및 여행</u> 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1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 (행정자치부령).....	제 11조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 (행정안전부령).....
제 12조(근무시간 등) ① ~ ③(생략) ④ 교육감은..... <u>교육인적자원부장관</u>	제 12조(근무시간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u>교육과학기술부장관</u>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를 “경상
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여금”을 “수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관할교육
장”을 “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을 “「경상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상여금지급”을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여금”을 “수당”으로 하고,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상여금”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 호

모범공무원증서

소 속
직 성명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u>상여금</u>	제 1 조(목적) <u>수당</u>
제 3 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본청의 각 담 당관 · 과장, <u>사업소장</u> , 고등학교장 및 <u>관할교육장</u> 이 행한다. ②..... <u>교육감</u>	제 3 조(추천) ①..... <u>직속기관장</u> <u>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u> ②..... <u>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u> <u>이라 한다)</u>
제 4 조(선발) ①모범공무원은 <u>경상북도</u> <u>교육 · 학예에 관한</u>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②(생략)	제 4 조(선발) ①..... 「 <u>경상북도</u> <u>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에서 <u>정한</u> ②(현행과 같음)
제 5 조(상여금지급) ① <u>모범공무원에 대하</u> <u>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u> ② <u>상여금</u> 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u>1년</u> 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 한다. <u><신 설></u>	제 5 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u>모범</u> <u>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u> <u>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u> <u>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u> <u>지급한다.</u> ② <u>수당</u> <u>2년</u> ③ <u>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모범</u> <u>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6 조(상여금지급의 중단) ①(생략) ②(생략) <u><신 설></u>	제 6 조(수당………)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27~229회 임시회, 제230회 정례회)



2009. 1. 인쇄 / 2009. 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